

## 법인 신설 및 지원 전출(안)

**□ 대상 : 해당분야 부서/직무 수행직원 및 관련경력 보유 직원 중 선발**

신설법인	구분	부서/직무	현원
(가칭) kt osp	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 네트워크부문 OSP관제팀</li> <li>▪ [부서] 광역본부 통신구팀</li> <li>▪ [부서] 광역본부 OSP담당</li> <li>* OSP지원팀 제외</li> <li>▪ [부서] 광역본부 CS부 및 지점</li> <li>* 전략상권팀·TF 제외</li> <li>▪ [직무] 그 외 광역본부 내선로운용/관리 직무</li> </ul>	3,600명
Biz개통/AS		▪ [직무] 전사 Biz개통/AS 직무	800명
(가칭) kt p&m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전원운용/관리</li> <li>* 중앙통신지원단 안보통신팀,</li> <li>광역본부 그룹운용개선부 제외</li> </ul>	370명
마이크로웨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 광역본부 도서무선통신팀·TF</li> <li>▪ [부서] 광역본부 서울무선센터</li> </ul>	50명

**□ 처우 : 신설회사 연봉 + 전직지원금 + 보로금 + 촉탁직 3년**

**○ 실 근속 10년 이상**

구분	세부 내용	비고
기본급	KT 기본급의 70% * 기본급 조정에 따라 연봉도 현재의 70% 수준으로 설계 예정 <sup>1)</sup>	기본급 조정에 따른 30% 차액은
전직지원금	월 기본급 <sup>2)</sup> × 1.635 <sup>3)</sup> × 지급월수 <sup>4)</sup> × 30%	정년잔여기간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

구분	세부 내용																											
근속보로금	신설법인 전출일('25.1.1)기준 정년 잔여 년수 16년 초과 직원 대상 신설법인 근속 3/5/7년차 도래 시마다 각 1천/2천/3천만원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정년잔여년수</th> <th>16년초과~17년이하</th> <th>17년초과~19년이하</th> <th>19년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신설</td> <td>3년 도래</td> <td>1천만원</td> <td>1천만원</td> </tr> <tr> <td>회사</td> <td>5년 도래</td> <td>-</td> <td>2천만원</td> </tr> <tr> <td>근속</td> <td>7년 도래</td> <td>-</td> <td>-</td> </tr> <tr> <td></td> <td>합계</td> <td>1천만원</td> <td>3천만원</td> </tr> <tr> <td></td> <td></td> <td></td> <td>6천만원</td> </tr> </tbody> </table>				정년잔여년수	16년초과~17년이하	17년초과~19년이하	19년초과	신설	3년 도래	1천만원	1천만원	회사	5년 도래	-	2천만원	근속	7년 도래	-	-		합계	1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정년잔여년수	16년초과~17년이하	17년초과~19년이하	19년초과																									
신설	3년 도래	1천만원	1천만원																									
회사	5년 도래	-	2천만원																									
근속	7년 도래	-	-																									
	합계	1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촉탁직	3년, 0.4억원/년(시장가치에 따라 상향 가능)																											
복지	전출 직원은 현 KT 수준 유지																											

## ○ 실 근속 10년 미만

구분	세부 내용	
기본급	KT 기본급의 100%	
전직지원금	없음	
전직보로금	개인별 1년치 연봉 * 월 기본급 <sup>2)</sup> × 1.635 <sup>3)</sup> × 12개월	
촉탁직	3년, 0.4억원/년(시장가치에 따라 상향 가능)	
복지	전출 직원은 현 KT 수준 유지	

1) 70%로 조정되는 항목은 기본급 + 성과급<sup>440%</sup> + 성과배분<sup>693만원</sup> + 초과수당<sup>월20시간</sup>,

급식통근보조비는 KT와 동일

2) '24년도 인사평가와 승진을 반영한 '25년 기본급(임금피크 직원은 피크임금 기준)

3) 연봉환산계수 : 기본급 + 성과급<sup>440%</sup> + 성과배분<sup>149%</sup> + 초과수당<sup>월20시간</sup> 반영

\* 성과배분제는 '23년 1/2차 지급분(693만원) 기준으로 월 기본급 대비 평균 지급률로 환산 적용

\* 신설법인 급식통근보조비는 KT와 동일하므로 미반영

4) 전출일로부터 정년퇴직 예정일까지의 정년 잔여 개월수(최대 187.2개월)

\* 임금피크 미적용기간은 1개월, 적용기간(만58~59세)은 1개월당 0.8개월 적용

## 그룹사로의 업무 이관 및 전적 전출(안)

### □ 대상 : 해당분야 부서/직무 수행직원 중 그룹사에서 선발

구분	부서/직무	현원	이관 그룹사
C&R	▪ [직무] 전사 C&R운영 직무	120명	kt is/cs
법인CRM	▪ [부서] Enterprise부문 법인CRM센터	50명	kt is

### □ 처우 : 신설회사 연봉 + 전직지원금

구분	세부 내용
기본급	KT 기본급의 50% * 기타 성과급/수당 등은 해당 그룹사의 제도 준용
전직지원금	월 기본급 <sup>1)</sup> × 1.635 <sup>2)</sup> × 지급월수 <sup>3)</sup> × 50%
복지	해당 그룹사의 복지제도 준용

1) '24년도 인사평가 및 승진을 반영한 '25년 기본급(임금피크 직원은 피크임금 기준)

2) 연봉환산계수 : 기본급 + 성과급<sup>440%</sup> + 성과배분<sup>149%</sup> + 초과수당<sup>월20시간</sup> 반영  
\* 성과배분제는 '23년 1/2차 지급분(693만원) 기준 월 기본급 대비 평균 지급률로 환산 적용

3) 전출일로부터 정년퇴직 예정일까지의 정년 잔여 개월수(최대 103.2개월)

\* 임금피크 미적용기간은 1개월, 적용기간(만58~59세)은 1개월당 0.8개월 적용

※ 상권영업, 법인가치영업, 현장지원 분야(현원 약 760명)는 업무 폐지

## 특별희망퇴직(안)

### □ 대상

- 법인 신설, 그룹사로 업무 이관, 업무 폐지 분야는, 실 근속 10년 이상이면서 정년 6개월 이상 남은 직원 중 선발
- 그 외 분야는, 실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정년 6개월 이상 남은 직원 중 선발

### □ 처우 : 특별희망퇴직금 + 추가 혜택

- 특별희망퇴직금 : 월 기본급<sup>1)</sup> × 산정월수<sup>2)</sup> × 지급률(%)<sup>3)</sup>

구분	세부 내용
1) 월 기본급	보수규정 제42조의 피크임금 기준의 월 기본급 적용
2) 산정월수	정년퇴직일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 2월당 1월(2월 미만은 1월로 계산) 정년퇴직일 5년 초과 10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 4월당 1월(4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최대 45개월
3) 지급률(%)	$145 + [ 110 - \{ ( 50 / 45 ) \times \text{산정월수} \} ]$

※ 지급률은 최소 205% ~ 최대 251.7% (現 희망퇴직 135% ~ 153.7% 대비 약 1.5배 상향)

- 추가 혜택 : 최소 1,300만원 ~ 최대 약 6,080만원, 성과배분 1차분 별도 지급

구분	세부 내용	
특별학자금 (대상자 限)	자녀별 정년까지 수혜 가능한 대학장학금/자녀교육보조비 중 높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단, 최대지원금액은 대학장학금 지원한도 적용(4,480만원)	
구분	대상	지원내용
대학장학금	대학생/대입예정자녀	대상자녀별 지원학기 <sup>최대 10학기</sup> × 280만원
자녀교육보조비	만18세 이하 자녀	대상자녀별 100만원/년

구분	세부 내용
우리사주	우리사주 무상지급분 회수에 따른 보상 (최대 300만원)
지원금 (대상자 限)	* '22년 우리사주 취득 참여자 限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희망퇴직 시 회사의 무상지급분(15%)이 우리사주조합으로 회수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
특별지원금	전직/창업 활동 지원금 (1,000만원)
건강검진비	본인/가족 합산 연간 60만원의 5년치 상당 금액 (300만원)
성과배분	'24년 성과배분 지급액 1차분 * 성과배분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 원칙이나, 금번에 한하여 특별희망퇴직자에게도 지급 (지급 금액은 추후 확정, '24년 성과배분 2차분은 미대상)

### ※ 전출 · 특별희망퇴직 미신청/미선발 직원 재배치(안)

- Total영업(Mass+B2B), VOC 대응, 신규고객 발굴 업무 수행하는 新 직무 생성
- 광역본부 직속으로 배치 후, 희망근무지 등을 고려 파견발령
- 개인별 계량 목표부여 및 성과관리 시행
- 직무전환교육 시행 (8주)

## 붙임. 연령별 일시금 평균 예시 \* 성과배분 지급액은 별도

(단위 : 억원)

구분	전직지원금		특별희망퇴직금		비고 (법정퇴직금 포함 시)
	신설법인 전출 시	기존그룹사 전출 시	현행 희망퇴직 산식 적용시	'24년 특별 희망퇴직금	
59세	0.1	0.2	0.3	0.6	0.7
58세	0.3	0.5	0.7	1.3	1.4
57세	0.6	1.0	1.1	2.0	2.1
56세	0.9	1.6	1.6	2.7	4.8
55세	1.2	2.1	2.0	3.3	5.4
54세	1.5	2.6	2.3	3.8	5.8
53세	1.8	3.1	2.4	4.0	6.0
52세	2.0	3.5	2.5	4.3	6.1
51세	2.2	4.0	2.6	4.3	6.1
50세	2.3	4.3	2.6	4.3	6.0
49세	2.3	4.0	2.3	4.0	5.7
48세	2.5	3.9	2.3	4.0	5.6
47세	2.6	3.8	2.3	3.9	5.5
46세	2.8	3.4	2.2	3.8	5.4
45세	3.0	-	2.2	3.8	5.3
44세	3.2	-	2.2	3.7	5.1
43세	3.2	-	2.1	3.6	4.8
42세	3.3	-	2.1	3.6	4.7
41세	3.2	-	2.1	3.6	4.6
40세	3.3	-	2.1	3.6	4.6
39세	3.1	-	2.0	3.5	4.4
38세	3.1	-	2.0	3.4	4.2
37세	3.1	-	2.0	3.4	4.2
36세	3.1	-	2.0	3.5	4.1
35세	3.1	-	2.0	3.4	4.0
34세	3.3	-	2.1	3.6	4.1